



제302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4차 복지환경위원회

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4. 22.

복지환경위원회

전문위원 서용관

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천마산 군립공원의 명칭을 천마산 시립공원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제명, 위원회 명칭 등 용어 변경
- 자연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문 정비 및 신설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, 위원회 명칭 등 조례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변경

- 용어
 - (현행) 군립공원
 - (개정) 시립공원
- 제명
 - (현행)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
 - (개정)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
- 위원회 명칭
 - (현행)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
 - (개정) 남양주시 시립공원위원회

나. 목적, 다른 조례와의 관계, 공원의 명칭과 위치 등 조례의 기본적인

사항 규정 (안 제1조~제4조)

다. 시립공원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(안 제5조~제8조)

○ 위원회 구성 인원 기준 및 당연직 위원 구성 정비 (안 제6조)

○ 서면심의에 관한 조항 신설 (안 제7조)

라.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항 신설 (안 제9조~제12조)

○ 점용료 등의 징수 요율 및 산정 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 (안 제10조)

○ 점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조항 신설 (안 제12조)

마. 공원 내 점용허가 등에 대한 변경 및 원상회복에 관한 조항 신설
(안 제13조~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참고자료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복지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2. 1. ~ 2. 21.(20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지난해 변경된 ‘천마산 시립공원’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 안 제9조에서 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는 경우 법 제38조에서 정한 징수 대상과 상이하여 해석상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법률 인용조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그 밖에 개정내용은 공원위원회 및 점·사용료 징수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☑ 「자연공원법」

제9조(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,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,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,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,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,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(이하 “도립공원위원회”라 한다) 및 군립공원위원회·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(이하 “군립공원위원회”라 한다)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20. 6. 9.>

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(包括承繼人)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제10조(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)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20. 6. 9.>

1. 자연공원의 지정·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
2.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)
3. 공원계획의 결정·변경에 관한 사항
4.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제20조(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)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(換地)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 4. 5.>

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5. 29.>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제23조(행위허가)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.

1.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
2.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·돌·모래·자갈을 채취하는 행위
3.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(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)을 하는 행위
4.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
5. 하천 또는 호소(湖沼)의 물높이나 수량(水量)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
6. 야생동물[해중동물(海中動物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을 잡는 행위
7.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(해중식물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채취하는 행위
8. 가축을 놀아먹이는 행위
9.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
10.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·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 12. 13.>

③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

다. <개정 2022. 12. 13.>

1.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
 2.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
 3.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
 4.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
-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2. 12. 13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제24조(원상회복) 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. 다만,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예치금”이라 한다)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④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제38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(제71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,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, 제9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(세출)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필요
- (세입)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 징수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위원회 개최시 출석위원에게 참여수당(1인 10만원) 지급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- 해당 전부개정안은 제명, 위원회 명칭 등 용어변경과 자연공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문 정비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.

[주요 개정내용]

- 제명, 위원회 명칭 등 조례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변경
(군립공원 → 시립공원)
- 목적, 공원의 명칭과 위치 등 조례의 기본적인 규정 신설(안 제1조~제4조)
- 시립공원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 제5조 ~ 제8조)
-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9조 ~ 제11조)
- 점용허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3조 ~ 제14조)

※ 3년간 세외수입 징수현황(점용료)

구 분		2021년	2022년	2023년
총 징수액		0원	1,320원	4,120원
세외수입 (기타사용료)	부과건수	0건	2건	2건
	부과금액	0원	1,320원	4,120원

4. 작성자 :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